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공고

2026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25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적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하여 기관의 자발적 목표 달성 유도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6항(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다수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로 등록된 경우 다수의 건축물 중 1개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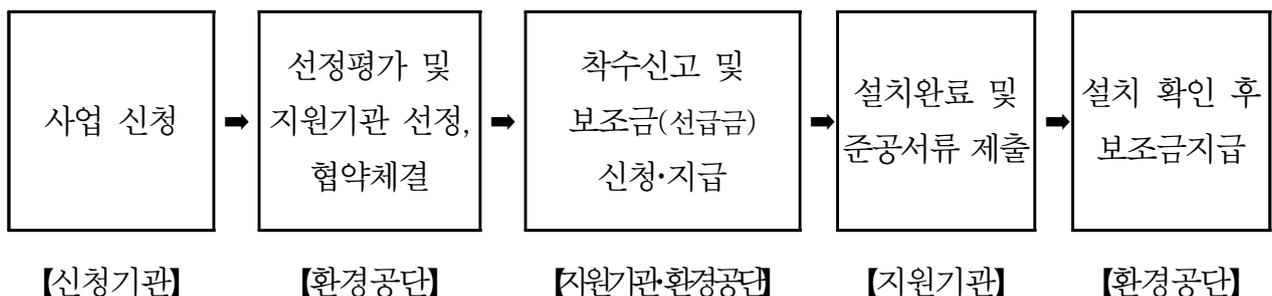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단년도
- 지원 규모 : '26년 총 4,500백만원
- 지원 설비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부록 1]에 따른 지원 감축설비

구분	기술 요소
① 탄소무배출 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예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수열, 지열, 풍력 등
② 에너지효율 제고 수단	·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호, 고기밀성 단열문, Cool Roof (차열도료), 외부 차양장치(일사조절장치) · (전기) 고효율 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기계) 폐열회수열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히트펌프*, 인버터,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고효율설비, 기타 공정개선 설비

* '26년 지침 개정으로 신규 설비 추가

- 지원 한도 : 시설당 국비 최대 5억원(국비 50%, 자부담 50%)
※ 기관당 최대 3개 시설(건물) 이내 지원
- 지원 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부대공사 포함),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폐기물처리비, 조달수수료 등은 제외
- 지원 절차



4.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2.25. ~ 2026.3.24.

□ 신청방법

○ (사업신청) 전자공문으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한글파일 hwp) 및 증빙·참고자료*(스캔본 pdf)

* 사업비 산정근거(견적서, 에너지진단보고서 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근거 자료, 건축물대장(다수의 건물이 하나의 시설로 등록된 경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등
-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목록 일체

※ 전자공문으로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신청기간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서류보완)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감축량 산정방법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원본대조필) 사본제출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5. 지원기관 선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업무처리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점*(12점), 감점**(△4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기관 선정

* 가점 항목: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여부, 저GMP 물질 사용설비 도입, 사전설문조사 참여 여부

** 감점 항목: 예산이월 여부, 선정 후 사업신청 취소 여부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시설)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필요시 현장 PT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 (지원 한도) 예산 한도 및 지원 대상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대상 선정) 선정된 지원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관리가 진행되므로, e나라도움(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6. 기타사항

□ 법령 등 준수

- 지원기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사업 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 기관에게 있음

□ 감축설비 설치 관련

- (계약 체결) 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치 완료보고) 지원기관은 설비를 설치하고 준공서류(설치 완료서, 준공계 등) 및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준공금) 수령

□ 사후 관리

- (감축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원 감축설비에 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설비 처분제한) 보조사업 종료일로부터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 지원기관은 보조금 지급 이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지정 제외 사유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 기타 사항

- 기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을 따름

7. 문의처

□ 사업문의 : 사업신청, 사업선정 및 운영관리 안내

○ 한국환경공단 공공온실가스관리부 보조사업 담당자 ☎ 032-590-3413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별첨 1. 지원사업 세부 절차 1부.
2. 지원 감축설비 목록 1부.
3.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1부.
4. 지원기관 계약 기준 1부. 끝.

[별첨1] 지원사업 세부 절차 (업무처리지침 상의 주요 절차 요약)

□ 지원사업 신청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아래 첨부서류 포함)를 사업 신청 시 파일 첨부하여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전자공문으로 제출

구분	No.	첨부서류
신청시설 관련 공통서류	1	[별지 제 1 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건축물대장 (단, 시설이 다수의 건물을 포함한 경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로 제출)
신청 감축설비 관련서류	6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에너지진단보고서 등)
	7	감축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8	(필요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9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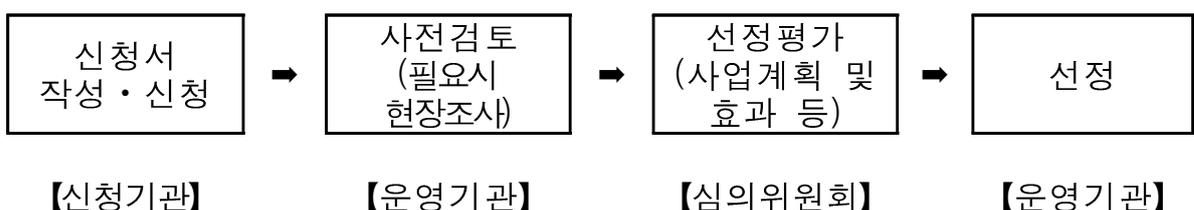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운영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보완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지원기관 선정

- 선정평가 절차



- (평가기준) 사업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점(12점), 감점(△4점) 항목으로 평가하여 지원기관 선정
- (선정방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시설) 중 지원기관을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

- 운영기관은 지원기관 선정평가 후 선정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지원기관에 통지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지원기관의 설비 투자비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일부를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착수신고

- 지원기관은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기관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금(선급금) 신청 및 지급

○ 착수신고서 제출 후, 지원기관은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 신청 가능

○ 지원기관은 선급금 수령을 위해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함)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선급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기관은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e나라도움에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상황보고

-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기관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황 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지원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설비내역, 설치투자비 및 보조금, 사업기간, 설치위치 등) 변경
 - 지원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 금액을 30% 이상 변경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 감축설비 설치완료 후 보조금(준공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감축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기관은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준공금 신청 시) : 선금금 신청 절차와 동일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기관은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 수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e나라도움에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비 정산

- 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준공금 지급시), 폐지를 승인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으로 제출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7호)’의 [별표1]에 따라 비목·세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지원기관은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검증보고서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설비 수익 및 발전량 관리

- 지원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재생에너지 등에 의한 에너지는 자가 소비용으로만 이용하여야 함
-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은 경우 한전을 통해 발전량을 차감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다.
 - 단, 불가피하게 현금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산한 금액에 대해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너지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5년간 매년 연 1회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지원기관은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시 운영기관에 제출(사후관리 이후에도 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매년 1월말까지 관리대장 사본 제출)
 - 지원기관은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26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지원기관은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 신청시 계획했던 예상 감축량에 비해 낮은 경우 [별지 제27호서식]개선계획서를 제시하고 차년도 감축실적 보고서에 그 결과를 수록해야 함
- ※ 지원기관은 보조금 지급 이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지정 제외 사유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별첨2] 지원 감축설비 목록

지원 설비		지원 범위
탄소 무배출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예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수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수단	건축	② 내·외부 단열보강
		③ 바닥 단열 및 난방
		④ 고성능 창호
		⑤ 고기밀성 단열문
		⑥ Cool Roof(차열도료)
		⑦ 외부 차양장치(일사조절장치)
		전기
	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계	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⑪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⑫ 히트펌프
		⑬ 인버터
		⑭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⑮ 고효율 설비(⑩~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예시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⑯ 기타 공정개선 설비 ※ ⑩~⑮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시설(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별첨3]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신청 감축설비의 타당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감축량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 유지·보수 계획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량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감축량(별도 근거 제시시 인정 가능)	감축량	150톤 이상	100톤 이상	50톤 이상	25톤 이상	25톤 미만	
		감축효과	50 이상	47	44	41	38	
			25 이상	47	44	41	38	35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 ₂ /년) ÷ 설비투자비(억원)		10 이상	44	41	38	35	32
			5 이상	41	38	35	32	29
		5 미만	38	35	32	29	26	
정책 효과 (20)	① 준공연도 평가(10) - 공고연도(N년) 기준 준공 경과년수	연도(년)						
		N-20 이전	N-19~ N-17	N-16~ N-14	N-13~ N-11	N-10		
		10	9	6	3	1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감축설비(10) - 감축설비별(신재생에너지, 액티브기술, 패시브기술) 감축효과 평가 ※ 설비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대 10점 부여 ※ 운영지침 p.36 <표> 감축기술 분류 참조	신재생	액티브		패시브				
	5	3	2					
가점 (12)	① 탄소중립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여부(5) -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대상기관	완료	진행중	해당없음				
		5	3	-				
	②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저(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5		
③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사업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					2			
감점 (△4)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실집행률 70%미만)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기관					△2		
	과거 동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이후 사업을 취소한 기관					△2		

*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24.12)」 최종 대책에 포함된 제품군별 사용 제한 일정 기준

[별첨4] 지원기관 계약 기준

- 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기 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난도 공종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조달청에서의 검토 등이 어려워 자체조달 방식으로 계약 가능(사업별로 입찰 시 조달청 확인 필요)

- 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